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5-121관련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5. 10. 22.

발의자 : 행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관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환수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제8조 “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비 등을”을 “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비 등을”로 함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 중 “**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치우개선비 등을**”을 “**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치우개선비 등을**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- (신설)	제8조(처우개선비 등 환수)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 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7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 선비 등을 신청 또는 청 구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 우 관련 법령에 따른 환 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	제8조(처우개선비 등 환수) ----- ----- -----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에 따른 처우개선비 등을 ----- ----- ----- ---